

교 육 부 장관 귀하  
학교법인이사회 귀중

# 監 査 報 告 書

2021회계년도 (2021년 03월 01일부터  
2021년 02월 28일까지)

붙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입회인)서명  
날인은 법인: 사무국장, 대학교: 재무처장, 부속병원:  
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  
·이사장·대학교·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  
의 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81423  
-232: 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  
으로 같음함.

학 교 법 인 제 한 학 원

대 구 한 의 대 학 교

# 감 사 보 고 서

##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2021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2021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1. 04. 19.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 김도연

감 사 남대하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사무국장

성 명 나정민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# 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			
4. 부속병원 관련				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제한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  
 2. 대구한의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  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1 년 4 월 19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 김도연 (인)  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219호)

감 사 남대하 (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기관장

2021 년 4 월 19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이 사 장 기우항 (인)



피감사기관장

2021 년 4 월 일

대구한의대학교

총 장 변창훈 (인)

교 육 부 장관 귀하  
학 교 법 인 이 사 회 귀중

# 監 査 報 告 書

2021회계년도 (2021년 03월 01일부터  
2021년 02월 28일까지)

붙 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입회인)서명  
날인은 법인: 사무국장, 대학교: 재무처장, 부속병원:  
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  
·이사장·대학교·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  
의 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81423  
-232: 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  
으로 같음함.

학 교 법 인 제 한 학 원

대 구 한 의 대 학 교

# 감 사 보 고 서

##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귀하
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)의 2021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)의 2021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 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1. 04. 19 .
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 김도연 

감 사 남대하 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경리팀장

성 명 김병하 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# 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  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)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
3. 학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4. 부속병원 관련				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제한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  
 2. 대구한의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  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1 년 4 월 19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 김도연 (인)  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219호)

감 사 남대하 (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기관장

2021 년 4 월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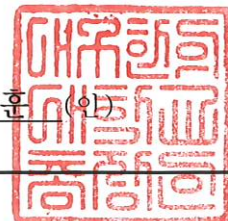
이 사 장 기우항 (인)

피감사기관장

2021 년 4 월 19일

대구한의대학교

총 장 변창훈 (인)



교 육 부 장관 귀하  
학 교 법 인 이 사 회 귀중

# 監 査 報 告 書

2020회계년도 (2020년 03월 01일부터  
2021년 02월 28일까지)

붙 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입회인)서명  
날인은 법인: 사무국장, 대학교: 재무처장, 부속병원:  
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  
·이사장·대학교·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  
의 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81423  
-232: 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  
으로 같음함.

학 교 법 인 제 한 학 원

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

# 감 사 보 고 서

##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귀하
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의 2021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의 2021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1. 04 . 18 .
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 김도연 

감 사 남대영 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총무과장

성 명 김대영 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# 감사보고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)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 81423-232:2003.2.25)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
3. 학교 관련				
4. 부속병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제한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  
 2.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  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1년 04월 19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사 김도연 (인)  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219 호)

감사 박대하 (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기관장

년 월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이사장 기우향(인)

피감사기관장

2021년 4월 19일

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

병원장 김종대(인)



교 육 부 장 관 귀 하  
학 교 법 인 이 사 회 귀 중

# 監 査 報 告 書

2020회계년도 ( 2020년 3월 1일부터  
2021년 2월 28일까지 )

붙 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입회인)서명 날인은 법인: 사무국장, 대학교: 재무처장, 부속병원: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·이사장·대학교·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의 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81423-232: 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.

학 교 법 인 제 한 학 원

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

## 감 사 보 고 서

###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귀하
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 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 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1. 4. 19.


학교법인

감 사 김도연 

감 사 남대하 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총무과장

성 명 김부득 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별지 제1호 서식)

# 감사보고서

교육부장관 귀하  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)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 81423-232:2003.2.25)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포항한방병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
3. 학교 관련				
4. 부속병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제한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  
2. 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  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1년 4월 19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사 김도연(인)  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219호)

감사 남대하(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기관장

년 월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이사장 기우향(인)

피감사기관장

2021년 4월 19일

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

병원장 최해윤(인)

